

大學評價 認定 체제의 制度化 방안

朴鍾烈

(慶北大 教育學科)

대학은 하루 아침에 이상적인 학문의 전당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되어 장기적으로 육성·발전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한국의 대학이 세계 속의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를 통한 합리적인 투자 계획이 장기적 안목에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1. 머리말

한국의 대학 평가 제도가 확립된 것은 196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19세기 말부터, 일본은 1941년 후부터, 영국은 1919년부터, 필리핀은 1950년 이후에 大學評價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약 25년 정도의 대학 평가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외국의 경우는 반세기 이상이 된다. 이것은 우리의 대학교육 역사가 짧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의 大學評價制度는 1960년에 문교부 주도의 一回的·短期的 問題點 중심의 평가가 시초이었으며, 1970년대에는 실험대학에서 제출되는 연말 운영 보고와 이를 토대로 한 현지 방문 평가가 官·學 主導에 의하여 발전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1982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의 발족으로 이 업무가 이관되었다가 1984년 韓國大學敎育協議會法에 의하여 法이 인정하는 大學評價로 制度化되었다.

그동안 大學評價事業의 制度化를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여러 가지의 세미나와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1984년에 '大學評價의 發展方向摸索을 위한 세미나'와 1985년에 '大學評價長期發展計劃 수립을 위한 세미나'와 같이 대학 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래 계획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大學評價事業의 制度的 發展方向研究¹⁾(李星鎬·具丙林, 1985)와 大學機關評價研究의 課題과 展望(朴鍾烈, 1986)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大學評價事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高度技術情報社會의 大學 機能과 評價 方向'(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5)이라는 세미나를 통하여 大學評價

1) 이성호·구병림, 대학평가 사업의 제도적 발전 방향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5.

의 準據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기도 하고, 大學의 學科別 評價模型 開發에 관한 研究²⁾에서는 學科別 평가의 준거를 과학적으로 탐구하여 보기로 하였다.

이상과 같은 대학 평가에 관련된 세미나 그리고 연구를 통하여 大學評價의 韓國化와 土着化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大學評價의 目標, 評價基準 設定, 自體評價, 現地訪問 評價 結果 活用上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³⁾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을 大學評價認定制度와 관련하여 그改善方向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평가의 목적은 政策的인 次元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大學의 質的 發展을 촉진하기 위하여 업적 평정 모형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의사 결정 모형에 터한 大學評價制度도 大學의 질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대학의 부단한 자기 개신을 위해서는 業績評定模型이 더욱 자극적일 것이다⁴⁾(朴鍾烈, 1986). 그러나 일부 總·學長들은 현재의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異見을 제시한다. 그 이유로는 한국의 大學 設立은 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하여 文敎部가 設立時 이미 認可를 하였고, 그렇지 않아도 統制를 많이 받는 현 大學 行政에서 評價認定制度는 평가를 통한 속박으로 갈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評價의 기본 목적이 大學 經營者에게 經營에 관련된 情報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이 추구하여야 秀越性·自律性·多樣性이 조장될 수 있다면 부수적인 역기능은 보완해 나가는 方向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 大學의 貢務性에 대한 회의가 社會 일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對外的인 大學의 能力(competency)과 效果를 이해시키지 못한 결과라고 볼 때 大學評

價認定制度의 도입은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社會變動에 따른 大學의 機能 變化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지금까지의 大學評價는 매년 실시하여 大學의 業務를 加重시키는 역기능을 하였으나, 大學評價認定制度의 도입과 더불어 評價 週期를 長期化·多樣化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전환을 시도하기 위하여는 대학 평가 연구위원회의 활발한 토의와 문교 당국자의 이해가 先行되고 아울러 全國 大學의 이해와 적극적인 호응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自律 ability이 있는 大學에 대하여는 評價 週期로 5년 내지 10년으로 늘리고, 그렇지 못한 大學에 대하여서는 2년 혹은 3년마다 評價를 실시하여 大學의 業績에 따라公正한 評價 週期를 책정하는 방안이 연구 검토되어야 하겠다.

세째로 大學評價 結果의 活用面에서 볼 때 현재는 評價 結果를 지체없이 文敎部長官에게 제출하도록 法定化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政府의 재정 지원이나 入學定員 決定 및 研究 支援 등을 결정하는 데 그 結果를 活用하도록 하는 方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評價의 目的이 의사 결정자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터한 合理的인 報償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活用에 極大化를 기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소극적인 활용에서 적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報償策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大學評價制度 改善의 方向은 현재까지의 대학 평가 제도가 의사 결정 모형에 입각한 접근이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大學評價認定制度로 變換될 것을 기대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2) 박종렬外 4人, 대학의 학과별 평가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6.

3) 강우철, 현행 대학 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4.

이성호·구병립, 전계서.

황정규, “대학 평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대학교육 제20호, 198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6년도 대학평가계획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6.

박종렬, “대학 기관 평가 연구의 과제와 전망”, 한국교육학회 교육평가연구회, 1986.

4) 박종렬, 전계서, p.22.

2. 目的과 機能

고등교육은 自我實現을 통한 指導的 人格의 합양과 國家 및 人類社會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이를 위해 고등교육기관은 教育·研究·奉仕의 기능을 조화롭게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앞으로의 고등교육은 한국인으로서의 높은 稚持와 創意性·道德性을 육성하는 全人教育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고등교육의 질적 미흡과 運營의硬直性을 시정하고 다가올 21 세기의高度技術情報社會를 선도할 고급 인력을 배출하며 國제化·민주화 사회의多元主義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教育改革審議會는 秀越性·自律性·多樣性·効率性을 고등교육 개혁의 방향으로 삼고 있다.⁵⁾

여기에서 제시한 改革의 세부 방침을 方向에 따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秀越性의追求를 위하여 教育의 質的 水準 提高를 위한 個別大學間 善意의 경쟁을 유도한다. 최소 요건 이상의 실적과 노력에 대해서는 選別의 育成 및 差等支援原則을 적용한다. 自律性의伸張을 위하여 대학교육에 관한 基準設定 및 質的統制은 대학간 評價認定體制 및 協議機構를 育成하여自律的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多樣性의助長을 위하여 行·財政의in支援에 있어서도 모든大學들이 동일한 類型으로 발전되는 경향을 止揚하고 각 대학(교)들이 比較 優位를 감안하여 수개 분야를 중점 육성함으로써 특색 있는 學問性向과 校風을 확립해 나가도록 한다. 그리고 効率性의 提高를 위하여 산학협동 체제의 강화와 대학 행정 체제를 혁신하고 사무 간소화 및 자동화를 추진하여 재정 운영을 합리화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教育改革審議會는 현재 한국대학 교육협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法定的 事業인 大學評價制度를 大學評價認定制度로 그 기능을 전환하는 데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 概念

大學評價認定制度의 原型은 美國의 大學評價制度(accreditation)의 기본理念과 節次 및 活用을 도입하자는 데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自發的自律體制機制로서의 役割을 수행하고, 둘째로 自律競爭體制로서의 高等教育機關을 育成發展시키고, 세째로 제시된 基準에 도달 여부를 판정하며, 네째로 選別의 育成 및 差等의支援을 실시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大學評價認定制度란 무엇인가? 대학 평가 인정 제도란 대학의 교육 활동을 종합적으로나 부분적으로 평가하고, 목적 성취와 질적 균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체적이고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⁶⁾ 여기서 目的 成就와 質的 均等을 부언하여 설명하면, 目的 成就란 個別大學이 계획한 目的일 수도 있고 評價認定機關이 제시한 基準일 수도 있다. 그리고 質的 均等이란 大學다와야 하는 最少 基準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대학 평가 인정 제도의 과정상에 필수적인 요소로는 대학의 教育的 意圖의 明確한 陳述, 教育的 意圖의 成就를 중심으로 한 自體評價活動 수행, 專門集團에 의한 現地訪問確認, 그리고 認定 基準에 비추어 본 評定委員會의 認定決定 등이다.

그러므로 대학 평가 인정 제도는 몇 가지의前提條件이 따라야 한다. 첫째로 대학 평가 인정을 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自發的·自律的決定에 의하여 참여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약 3,100개 기관이 업적 평정을 받았고, 아직도 1만여 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업적 평정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이 제도가 복종과 통제에 의하여 수행되지 않고 설복과 이해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 제도는 고등교육이 自律에 의하여 計劃·運營·評價된다라는 점을 기본으로 한다. 즉 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대학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의 고등교육이 수월성·자율성·다양성·효율성에 입각하여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세

5) 教育改革審議會, 高等教育改革의 方向, 教育改革審議會 高等教育分科, 1986, pp.25~28.

6) K.E. Young, Understanding Accreditation, Jossey-Bass, Inc., 1983, p.21.

제로 대학 평가 인정은 일반적이고 가변적인 準據에 더한 教育의 質을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교육의 질이 무엇인가를 합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나 時代的・社會的 요청에 따라 즐거운 변화되어야 한다. 네째로 대학 평가 인정 제도는 근본적으로 평가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며, 自體評價研究가 그 과정의 核心이 되어야 하겠다. 자체 평가는 대학의 자율적 기구에서 전문인들이 협심탄화하게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래 방향을 설정하여 가는 것이다. 따라서 個別大學의 目標設定과 運營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추후 목표를 설정・운영하는 것이다. 다섯째로 대학 평가 인정 제도는 개별 기관의 自體研究와 計劃을 토대로 하여 外部의 諮問도 받아야 한다. 이것은 대체로 현지 방문 평가팀에 의하여 실시되나 다른 전문 집단에 의한 자문으로 學校의 發展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대학 평가 인정 제도는 外部統制가 아닌 自律의 發展이라는 哲學의 바탕을 두고 있다.

2) 目的

대학 평가 인정 제도의 목적은 장님들이 코끼리를 어루만지듯 각자의 다른 이해 관계에 의하여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目的 하나만을 선정하면 教育의 質의 提高라고 하겠다. 美國의 고등교육 업적평정위원회(The Council on Postsecondary Accreditation)가 제시한 目的을 보면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981). 첫째로 教育의 効果性을 평가하기 위한 準據와 方針의 開發을 통하여 고등교육기관의 秀越性을伸張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둘째로 계속적인 自體研究와 計劃을 통하여 機關과 프로그램의 改善을 조장한다. 세째로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명확히 정의되고 적절한 목표 의식이 있으며, 기대한 성취를 얻을 수 있는 與件을 갖추고, 목표를 수행하며, 또한 계속되어질 수 있는가를 다른 機關이나 國民들에게 確信시켜 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네째로 기존의 그리고 개발 단계의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다섯째로 고등교육기관의 多樣性을 조장하고 개별 대학이 특수한 목표

를 성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성과와 학문의 자유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대학 평가 인정 제도를 그대로 한국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집단적 合意에 기초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남는 것은 평가 인정을 위한 準據와 基準이다. 이것은 自律的調整機關이 研究・開發을 통하여 합의하는 最少 到達基準值를 정하여 제시하는 방법도 있고, 適切한 目標值를 정하여 평가하였는가를 판정하는 價值判定의 방법도 있다. 어느 方向으로 갈 것인가에 대하여는 양쪽이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한 과제이다. 물론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일반적인 기준 제시와 학교마다의 特殊性에 터한 가치 판단을 동시에 혼합하여 시행하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그 이유로는 보편성을 추구하면서 特殊性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機能

대학 평가 인정 제도가 어떠한 役割 내지 機能을 하는가를 규정하는 것은 그 目的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여기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기능은 일반적인 평가의 기능이 아니라 教育改革審議會의 改革 方向에서 대학 평가 인정 제도와 연계하여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추출하여 설명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로 대학 평가 인정 제도는 교육의 質의 水準提高를 위한 개별 대학간 善惡의 경쟁을 유도하는 機能을 한다.

둘째로 대학의 長期의 發展計劃 수립은 물론 모든 教育의 측면과 관리・운영적인 측면의 政策決定에 필요한 資料를 연구・분석 제시한다.

세째로 대학교육에 관한 基準設定 및 質의 統制를 한다.

네째로 대학의 內・外의 모든 運營狀況을 진단・평가하며, 특히 內의 充實度에 대한 運營評價에 주력한다.

다섯째로 最少 要件 이상의 成績과 努力에 대해서는 選別의 育成 및 差等支援을 하되 大學發展基金(가칭)을 조성하여 大學 自律 協議機構에

大學財政補助委員會(가칭)를 두어 대학의 總經費 또는 研究費에 대한 보조 등의 결정을 평가 결과와 연계시킨다. 잠정적으로는 대학별 전체 定員 또는 계열별·전공영역별 定員 規模를 책정해 주나, 大學評價認定制度가 정착화된 후에는 평가 결과에 터한 개별 대학의 系列 및 專攻領域別 定員을 策定한다.

이상의 대학 평가 인정 제도의 기능을 살펴 보면, 첫째로 한국의 대학 평가 제도는 目標管理의 侧面보다는 過程내지 運營의 侧面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둘째로 美國의 대학 평가 제도와 英國의 UGC의 기능을 혼합한 것이며, 세째로 自由競爭을 통한 選別의 育成과 差等支援을 하는 것이다.

3. 組織과 構成

앞에서 살펴 본 大學評價認定制度의 目的과 機能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組織이 필요하다. 組織이란 특정한 目的의 추구를 위하여 意識的으로 구성된 社會的單位이다. 대학 평가 인정 제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한 바, 이 조직의 특성을 다섯 가지 범주, 즉 技術, 環境, 構成員, 構造와 過程의 樣態 및 產出로 나누어⁷⁾ 대학 평가 인정 제도의 目的과 機能을 연결시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技術의 면에서 볼 때 대학 평가 인정 제도와 관련된 조직은 評價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環境의 면에서 볼 때 대학 평가와 관련된 當事者인 大學, 政府의 文教部, 大學教育을 받은 人力을 활용하는 企業體 및 學父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적 영향을 받는다. 構成員의 측면에서는 專門人力이 이 활동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構造와 過程의 樣態 측면에서는 非官僚的의 組織體로서 의사 결정·의사 전달·통제 과정이 民主的開放性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產出은 評價의 認定이다. 그리고 이 產出은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대학 평가와 관련된 조직은 評價의 專門家들이 모인 非官僚

的인 民主的 組織體라고 할 수 있겠다.

機構와 組織에 관련하여 教育改革審議會는 대학 평가의 제도화를 위하여 國家單位에서는 대학의 自律協議機構에 상설적인 大學評價委員會와 그 하부 기구로 系列 또는 專攻領域別 分科委員會를 둘 것과 大學單位에서는 대학평가위원회와 大學自體評價를 연계시키기 위하여 개별 대학 단위에 自體評價委員會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國家單位의 常設的인 大學評價委員會는 한국 대학교육의 장기 발전 계획을 입안하는 중추 기구로서 專門性·科學性·公正性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계의 인사들로 구성한다. 그리고 委員 중에는 常任研究 專門委員을 두어 매년 각 大學의 年次評價結果를 보고 받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大學教育에 관한 政策決定에 필요한立案資料를 제시한다. 同委員會에서는 대학의 内·外의 모든 운영 상황을 진단 평가하며, 특히 内의 充實度에 대한 運營評價에 주력한다. 한편 대학 단위의 평가위원회는 教授代表·同門代表·社會人士·大學行政家 등으로 광범위하게 구성하고, 매년 대학의 관리 운영은 물론 대외적인 모든 상황을 평가하여 국가 단위의 大學評價委員會에 보고한다. 그리고 동 委員會는 대학의 장기적인 發展計劃樹立은 물론 모든 教育的인 侧面과 管理·運營的인 측면의 政策決定에 필요한 자료를 研究·分析提示한다. 이를 내용별로 구분하면 뒤의 〈표 1〉과 같다.

여기에서 教育改革審議會가 제시하고 있는 大學評價認定制度의 組織과 構成 그리고 機能의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大學의 自體評價活動을 強化·促進하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大學評價와 관련하여 大學別로 自體評價委員會가 있기는 하였으나 本案과 같이 여러 가지 機能을 制度的으로 수행하진 않았다. 둘째로 大學教育과 관련된 여러 人士가 評價活動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주로 大學의 專門教授들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나, 中央 단위에서는 社會各界各層의 人士들, 大學

7) R.H. Hall, *Organizations : Structure and Process*, Englewood Cliffs, N.J. Printice-Hall, Inc., 1972, pp. 61~77.

〈표 1〉 단위별 대학 평가 기구의 구조과 기능

평가 기구	国 家 単 位	大 學 単 位
평 청	大學評價委員會・系列 또는 專攻領域別 分科委員會	○○○大學(校) 自體評價委員會
구 성	各界 人士 및 常任研究 專門委員	教授代表, 同門代表, 社會人士 및 大學行政家
제 회 기 능	韓國 大學教育의 長期發展計劃 立案	大學의 長期的인 發展計劃 樹立
평 가 기 능	대학의 내·외적인 모든 운영 상황 평가 (내적 충실햄에 대한 운영 평가)	매년 대학의 관리·운영 평가 및 대외적인 상황 평가
자료 제시 기능	정부의 대학교육에 관한 정책 결정에 필요 한 입안 자료 제시	교육적인 측면과 관리·운영적인 측면의 정책 결정에 필요한 자료 분석 제시
보고·분석 기능	매년 각 대학의 연차 평가 결과 분석	평가 결과를 대학평가위원회에 보고

단위에서는 學父母·同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참여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세째로 평가의 기능 외에 長期計劃과 資料 提示의 기능까지를 함으로써 意思決定者들에게 필요한 情報를 제공하고 企劃과 評價를 연결시키는 綜合的인 活動을 한다. 評價結果가 企劃에 연결되고 評價時 수립된 資料가 情報로 活用되는 것은 評價의 發展의 활용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案에서 實際 적용하는 데 몇 가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1) 組織과 構成

國家 水準에 大學評價委員會와 大學 水準의 自體評價委員會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 構成員이 大學評價委員會는 各界 人士로 구성하고 實際 業務 遂行은 常任研究 專門委員이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下部 組織의 系列別·專攻領域別로 分科委員會를 두고 있다. 그러나 大學評價認定制度의 핵심은 評價結果를 인정하여 주는 데 있다. 따라서 대학평가위원회는 이미 評價된 結果를 審議하는 데 그 機能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實務 作業을 하는 組織으로 分科委員會를 細分하여 機能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로써 分科委員會는 機關評價分科委員會·文科系評價分科委員會·理工系評價分科委員會·藝體能系評價分科委員會·農學系評價分科委員會·教育系評價分科委員會·醫學系評價分科委員會로 분리하여 大學別 自體評價委員會가 수행할 評價를 企劃·運營·評價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학별 자체평가위원회도 그 構成이 多樣하므로 實務 作業을 하기 위하여 中央의 조직과 마찬가지로 下部 組織으로 分科委員會를 8개로 구분하여 조직 구성하고, 교육 평가 전문가와 전공 교수들이 고루 배치되도록 한다.

한편 中央의 大學評價委員會의 事務 집행은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評價管理部가 수행하면 될 것이고, 大學의 自體評價委員會의 事務 집행은 대학의 企劃室(處)에서 수행하면 될 것이다.

2) 機能

기능에서 大學評價委員會나 自體評價委員會는 企劃·評價를 수행하고 政策立案 情報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매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과거의 한국대학 교육협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대학 평가도 그週期를 學校의 運營 狀況에 따라 3년, 5년, 10년마다 평가하는 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이유가 있다.

첫째로 大學의 改革은 그 變化 狀態가 5년 내지 10년이 되어야 알 수 있다. 둘째로 大學의 改革이 長期發展計劃에 의하여 企劃되므로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5년 내지 10년 정도의 長期投資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세째로 매년 큰 變化를 찾아 볼 수 없는 大學教育을 단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인력 낭비이며 비경제적이고 효과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 평가는 원하는 대학부터 실시하되 대학평가위원회는 그 週期로

〈표 2〉 단위별 대학 평가 기구의 구성과 기능(안)

구 分	國 家 組 織			大 學 組 織		
	基本組織	下部組織	執行組織	基本組織	下部組織	執行組織
명 칭	大學評價委員會	分科委員會 기관·문화· 계·이공계· 예체능계· 농학계·교 육계·의학 계	KCUE 평가관리부	自體評價委員會	分科委員會 {기관 및 해} {당 분야별}	企劃室
구 성	各界人士 15 명 정도 및 常 任研究 專門 委員	專門人士 각 7 명 정도	當任研究員	각계 대표 10 명 정도 및 常 任研究委員	전문 인사 각 5 명 정도	常任교직원
제 회 기 능	심의·확정	—	한국 대학교 육 장기 발전 계획 연구	심의·확정	—	장기 발전 계 획 연구
정 보 기 능	—	—	정부의 대학 교육에 관한 정책 결정에 필요한 입안 자료 제시	—	—	정책 결정에 필요한 자료 분석 제시
평 가 기 능	평가 인정 심 의, 평가 주 기 결정	대학의 내·외 적인 운영 상 황 평가	행정 업무보조	확인·조정	대학의 관리· 운영 평가	행정 업무보조
보고·분석 기능	—	매년 각 대학 의 연차 평가 결과 분석	행정 업무보조	평가 결과보고	—	행정 업무보조

判定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機關評價와 系列別評價는 먼저 機關評價를 실시하여 인정을 받은 후, 系列別評價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 系列別評價도 週期制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위의 〈표 2〉와 같다.

4. 適用 領域과 範圍

대학 평가 인정 제도의 적용 범위와 對象領域은 政府當局의 의견과 該當學校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한계를 정하는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현재의 대학 평가 제도와 같이 4년제 大學에만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2년제 專門大學에도 擴大 適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適用領域도 機關運營評價 외에 어느 專攻領域에 실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代案에 대한妥當性을 언급하고자 한다.

1) 適用範圍

대학의 인가는 원칙적으로 문교부의 소관 업무이다. 그리고 大學의施設과 編制는 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하여 校舍의 基準 면적, 實驗實習·實技 등의 特別施設 면적, 體育場의 면적, 圖書와 學術雜誌, 그리고 附屬施設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그施行에 관하여 약간의 여유를 두고 있으나 소정의 擴充措置를 所定 基準대로 실시하지 못할 때는 廢校, 廢科, 學生募集停止,

〈표 3〉 시대별 대학 설립 연도

구분	설립 연도	1949년 이전	1950~1959	1960~1969	1970~1979	1980년 이후	계
综合	國立 私立	4 20	6 7	— 6	— 2	1 —	11 35
單科	國立 私立	5 1	— 4	2 7	3 10	1 9	11 31
敎育大學 神學大學		9 2	1 2	1 3	— 2	— 3	11 12
계		41	20	19	17	14	111

定員 減縮 등 行政 措置를 단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규적인 면을 살펴 보면, 도서와 시설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學事運營과 財政運營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強制的인 行政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과거에 설립된 4년제 대학을 설립 연도별로 구분하여 그 현황을 살펴 보면 위의 〈표 3〉과 같다. 이 표에 의하면 한국 대학의 50% 이상이 30년 전에 설립 인가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전문대학은 1980년 이전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되던 단기 고등교육기관을 정형화하여 일률적으로 전문대학으로 정비하였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미흡한 점이 많으며 벌써 7년이 넘어가고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質的 統制를 통한 秀越性 追求를 재질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 평가 인정 제도는 전문대학에까지 확대 실시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하겠다. 특히 1985년 현재 대학(교)의 학생 수가 93만 명에 이르고, 전문대학의 학생 수가 24만 명에 이르러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수 중 92%를 절유하고 있는 사실은 4년제 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당면 과제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은 120여 개(‘87년 현재)에 이르고 있으므로 하나의 조직 체계로 충분히 운영·관리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리므로 대학 평가 인정 제도는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2년제 전문대학에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여야 한다.

2) 適用 領域

적용 영역의 문제는 기관 평가와 학문 영역별 평가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기관 평가는 學部評價·大學院評價·財政經營評價로 나누어 실시하여 왔으나, 기관 평가는 한 가지의 평가로 統合化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대학원은 전임 교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학부의 전공 교수가 별도의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시설이나 서비스를 학부 전용, 대학원 전용으로 확연히 구분할 수 없다. 세째로 기관을 평가할 때 學事運營만 별도로 보고 財政運營만을 별도로 볼 수 없다. 대학의 기능을 敎育·研究·奉仕로 볼 때 이를 원활히 기능하게 하려면 經營과 財政이 總體的으로 융해되어 결과가 나오고 운영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大學機關評價는 프로그램으로는 學部·大學院뿐만 아니라 영역의 면에서 學事·研究·奉仕·行政·財政 등 모든 것을 統合的·體制的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學問領域別로 볼 때 과거에는 敎養敎育, 人文系·社會系·自然系·工學系·醫學系를 평가하였다. 學科別로 볼 때 法學科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평가하였으며, 教科別로는 敎養國語·敎養英語·敎養國民倫理 및 敎養韓國史를 평가하기도 하였다. 美國의 학문 영역별 평가 기관의 명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건축학·예술·경영학·화학·수의학·건축학·치학·영양학·이공학·임학·보건행정·가정학·실내장식학·신문학·토건학·법률학·도서관학·의학·약학·음악·간호학·검안학·재약학·물리치료학·심리학·죽병학·보건학·상-

담학·사회사업·교사교육·신학·조경학 등으로 구분하여 COPA에서 평가 기관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볼 때 대체로 모든 평가 인정 기관들이 학과별 전공으로 세분되어 있으나 공학과 교사교육만은 전체를 둘어 학문 계열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 大學에서 비교적 개설이 많이 된 學科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연차적으로 첫째 해에는 50개 이상 개설된 학과에 적용하고, 2차 연도에는 30개 이상 개설된 학과, 3차 연도에는 10개 이상 개설된 학과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5. 準據 및 基準 設定

대학 평가 인정 제도는 大學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종체적이고 기본적인 要件을 갖추고 있는가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 평가 인정 제도는 몇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고등교육의 質的 向上을 위한 최저 수준을 설정하고 水準 미만의 學校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도와주고, 둘째로 대학의 自律的 改善을 촉진하도록 하며, 세째로 학부모·학생 및 기업인들로 하여금 대학의 質을 客觀的인 基準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는 高校生들의 大學 選擇, 學校間의 學點 認定 및 政府 機關의 財政 支援에도 활용되고 있다.

대학 평가 인정 제도가 대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의문을 주는 것은 “무엇이 대학의 발전인가?”라는 점이다. 高等教育의 機會를 더 많이 부여하기 위하여 대학이 양적으로 비대하여지는 것이 발전인가, 아니면 재정적인 압박을 받으면서도 적은 學生을 수용하여 잠재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발전인가? 大學의 본질인 상아탑단을 고집하여 학문적 성숙을 기할 것인가, 아니면 재정적인 점을 감안한 효율적인 학교 경영을 발전이라고 볼 것인가? 外部의 통제 속에서 大學의 안정만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진통을 겪더라도

大學의 自律性을 찾아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의문은 대학 평가에서 어떠한 문제 의식에서 대학을 分析하고, 分析에 필요한 資料는 무엇이어야 하며, 分析 結果는 어떠한 基準에 의하여 判定할 것인가를 제시하여 주는 것이다.

1) 準據

準據란 어떤 事物의 特性을 複단하는 論理的根據인 바, 어떤 사물이 어떤 準據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그 特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大學評價에 적용하면 大學이 대학다와야 하는 特성을 규정하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大學評價의 準據는 大學다운 大學이라는 證據를 제시하여 준다.

그러나 準據의 設定時 가장 어려운 점은 모든 專門家가 合意하는 準據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大學은 行政的 視角, 機能的 視角, 體制的 視角 및 哲學的 視角 등 여러 가지 접근에 의하여 概念化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接近의 特성을 살펴 보고 大學評價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1) 行政的 視角

대학을 행정적 시각에서 보는 것은 주로 교육 행정학적 접근이라 하겠다. 교육행정의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 행정에 대해 교육행정 영역구분론, 기능주의론, 행정과정론, 공권적 작용론, 협동행위론 등 여러 가지 접근을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教育行政의 課業은 교육목표행정, 교육내용행정, 교직원인사행정, 학생행정, 교육시설행정, 교육재정, 사무관리행정, 연구행정 및 봉사행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행정관을 대학 평가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주로 대학 본부 행정 기관의 課業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행정 활동의 기능은 분석할 수 있지만 大學教育의 本質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여러 活動이 奉仕的으로 운영될 때 결과적으로 大學教育의 本質이 달성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實際로 教育活動·研究活動·奉仕活動이 이루어지고 있는 現場과 質的인 성취도는 分析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이다.

(2) 機能的 視角

교육은 학생들의 능력을 신장·발전시킴으로써 자아 실현을 돋고, 이를 개개인의 발전이 통합되어 社會의 理想을 실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대학 사회는 知識의 전달을 그 본질적인 기능으로 수행하면서 지식의 창조 기능도 담당하고, 社會의 知識을 흡수하거나, 사회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機能도 동시에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大學의 機能을 教育·研究·奉仕라고 보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는 이러한 점에서 도출되었을 것이다.

고등교육의 산출을 教授產出·研究產出·社會奉仕產出⁸⁾로 보는 것이나, 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기관 평가 준거를 6개로 大分類하여 教授·學習活動, 研究活動, 社會奉仕活動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教授·訓練·研究·奉仕 등 대학의 사회적 기능을 새신하는 것이 곧 大學發展의 핵심임을 강조⁹⁾하는 것도 같은 觀角에서 대학을 보는 것이다.

(3) 體制的 視角

대학 기관을 體制的으로 볼 수 있다. 대학 체제란 대학에 관련된 모든 要素들의 集合을 의미한다. 체제는 動態的으로 볼 수 있으며, 靜態的으로 볼 수 있다. 動態의인 체제는 일반적으로 投入一過程一產出一還流를 거친다. 投入에는 환경·자원·역사·전략을 포함하고, 過程에는 組織과 課業이 있으며, 產出에는 目標達成度·자원효용도·적응도가 있고, 還流에는 全體體制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¹⁰⁾ 靜態의으로 體制를 보면 人間下位體制·構造下位體制·課業下位體制·技術下位體制로 구분할 수 있다. 人間下位體制는 기술·지위·가치·지도성·인사, 構造下位體制에는 권위·의사결정·계획·법규·

의사소통, 課業下位體制에는 교수·장학·행정·지원봉사·학생인사 그리고 技術下位體制에는 장비·자료·교육과정·지식 등이 포함된다.¹¹⁾

이와 같은 체제적 분석은 大學에 관련된 모든 要素들을 파악하는 데는 좋으나 評價上의 主限點이 없기 때문에 評價가 부잡하여지고, 내용별로 우선 순위, 즉 어느 것에 더욱 중요한 價值를 둘 것인가 하는 문제에 도달하게 되므로 적용상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4) 哲學的 視角

대학이 움직여 가는 기본적인 힘은 대학이 추구하여야 할 철학에 밑바탕을 두고 있다. 이 哲學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진다고는 하지만 현대 대학을 방향지워 주는 기본적인 흐름이 있는 것이다.

윤정일¹²⁾은 대학 발전의 핵심이 기회의 확대와 질적 관리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質의 準據로 秀越性·社會的適合性·自我實現 및 內的效率性과 外的生產性을 들고 있다. 그리고 강무섭, 정일환 및 민무숙¹³⁾은 秀越性·適切性·充足性 및 效率性을 대학 평가의 準據로 제시하고 있다. 金鍾喆¹⁴⁾은 대학교육의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에서 고등교육 접근의 機會擴大, 大學教育의 機會均等化, 프로그램의 適合性·效率性增大, 教育資源의 確保, 教育資源의 活用 效率화 및 高等教育의 效果增大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朴鍾烈¹⁵⁾은 機會均等·適合性·效率性·秀越性을 哲學的 기저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Dunn은 政策評價의 準據로 效果性·能率性·適正性·衡平性·對應性 및 適切性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哲學的 準據는 대학이 추구하여야 할 方向을 제시하여 주고, 大學經營의 기본 방침을 함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方向

8) 강무섭·정일환·민무숙, 한국 고등교육의 성과 분석: 개념 정립과 지표 설정, 한국교육개발원, 1984.

9) 이한빈, 국가 발전의 이론과 전략, 배영사, 1969.

10) Hoy, W.K. and C.G. Miskel, Educational Administration, Random House, N.Y., 1982.

11) R.G. Owens and C.R. Steinhoff, Administrating Change in School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76.

12) 윤정일外, 高等教育의 機會擴大 및 質管理, 한국교육개발원, 1979.

13) 강무섭·정일환·민무숙, 전개서.

14) 김종철, 교육행정학신간, 세영사, 1985, pp.433~437.

15) 박종렬, “대학평가의 내용과 방법”, 대학교육, 1987. 1(통권 25호).

〈표 4〉 대학의 기능적·체제적 과정상의 평가 준거

機能的 行政的	體制的	投 入	過 程	產 出
	大學 經營 目標	資源 配分	活用	目標 達成
教 育	適切性	公正性	能率性	效果性
研 究	"	"	"	"
奉 仕	"	"	"	"

을 근거로 한 평가의 내용을 규정하여 주기도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大學의 接近 方法으로 行政的·機能的·體制的·哲學的 視角은 어느 한 가지 접근만으로는 大學評價의 準據 設定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우선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복잡하여서는 평가의 방향이 흐려진다는 점이다. 체제적 접근과 같이 모든 요소를 정태적으로 분석하다가는 人的·物的·金錢的·時間的으로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너무나 전문적이어서는 실행상에 곤란이 따른다. 평가에 참여하는 人的構成을 보면 전체 대학의 모든 교수들과 社會의人士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력 선정 방법이 적용되고 또한 실제로 평가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세째로 대학별 特殊性을 살릴 수 있는 준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신설 대학과 기존 대학, 종합대학과 단과대학, 대규모 대학과 소규모 대학, 대학원중심대학과 학부중심대학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고, 대학 경영자의 發展意志도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의 〈표 4〉와 같은 평가 準據를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논의된 行政的·體制的·機能的·哲學的 視角을 종합하여 본 것으로 이를 문장화하면 大學의 機能인 教育·研究·奉仕活動을合理的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大學 經營 目標를 적절히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人的·物的·金錢的·教育的 資源을 適正하게 確保하며公正하게 配分하여 능률적으로 활용하고,

結果的으로 目標 達成을 效果的으로 이루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 평가의 準據는 大學의 本質인 教育·研究·奉仕機能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첫째로 大學의 經營 目標는 주어진 制約 條件下에서 社會的으로나 公共的으로 適切한 것으로 설정되었는가? 둘째로 이 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人的(敎職員·學生·地域社會人士 등), 物的(施設·設備·土地 등), 金錢的(登錄金·寄附金·國庫 등), 教育的(敎育課程·敎育材料 등) 資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公正하게 배분하였는가? 세째로 配分된 資源은 能率的으로 活用되었는가? 네째는 結果的으로 教育·研究·奉仕活動에 관련된 經營 目標는 어느 程度 달성하였는가? 등을 평가하여 보는 것이다.

2) 基準

기준의 설정은 準據가 合意되면 정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게 된다. 基準은 確認된 質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質의 程度를 相對的으로 표시하는 것이다.¹⁶⁾ 基準을 設定하는 것도 多樣한 方法이 있다.

첫째로 누가 기준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主觀的 基準과 客觀的 基準이 있을 수 있다. 主觀的 基準은 각 大學이 스스로 정한 經營 目標가 되는 것이며, 客觀的 基準은 評價認定機關이 研究를 통하여 開發해 낸 것이다. 둘째로 評價基準記述方法에 따라 計量的 基準과 質的 基準이 있다. 計量的 基準은 교수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교육비와 같은 수량적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나

16) Yehezkel Dror, *Public Policymaking Reexamined*, Scranton, Penni Chandler Publishing Company, 1968.

교수당 학생 수가 반드시 교육의 질과 효과성을 설명하여 주지는 않으며,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적다고 해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質的 基準은 학교가 제시하고 있는 目標는 적절한가와 같이 비교적 기술적 해답을 요구하며 민족학적 분석이 필요하기도 하다. 세째는 비교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相對的 基準과 絶對的 基準이 있다. 상대적 기준이란 전체 대학을 비교하여 그 적정성을 판정하는 것이고, 절대적 기준이란 최소 도달 기준을 정하여 이 기준에의 도달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基準의 다양성은 個別的으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방법이 옳은 것이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基準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수준은 연구되어야 하고 민주적으로 합의되어야 하는 미묘한 것이다.

6. 節次

大學評價의 절차는 評價의 目的과 內容에 따라 달라진다. 評價가 의사 결정 모형이냐, 판단 모형이냐, 업적 평정 모형이냐에 따라서 그 절차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절차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평가의 공정성·객관성·논리성·정의성은 차이가 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민주적으로 수행해야 함은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大學評價 節次는 評價研究計劃 草案作成, 文教部·評價研究委員會와 協議·決定, 評價 道具 開發, 學校別 自體評價 作業 遂行, 評價 結果 學校別 水準 分析, 現地訪問評價 實施, 資料分析, 報告書 作成, 文教部 報告 및 學校 報告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한국의 대학 기관 평가는 그 절차상 미국의 업적 평가와 비슷한 절차를 띠고 있지만, 단지 평가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評定 審議나 大外적인 공표를 하지 않고 있다. 美國의 大學評價의 節次를 살펴 보면 支援書 提出 및 登錄, 自體報告書 作成, 評價團의 現地訪問評價, 報告書 作成, 評定 審議會의 심의와 결정, 異意의 접수와 심사, 評價 結果의 公表 및 리스트 發刊, 週期的 再評價 實施, 特別 教育 프

로그램에 대한 追加評價 등을 하는 절차를 띠고 있다. 특히 대학 평가 인정 제도가 도입될 때는 미국의 업적 평가 제도(accreditation system)를 근간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 평가 인정 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하여 볼 수 있다.

•段階Ⅰ： 평가를 위한 研究·開發

대학 평가 인정 제도가 도입이 되면 이를 추진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나 관계 정부 당국간에 충분한 합의를 하고, 뿐만 아니라 대학 평가의 대상이 되는 대학 당국자와도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 한다. 합의되어야 할 내용에는 大學評價認定制度의 目的·機能·組織·適用領域과 範圍·準據·基準 및 節次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 結果의 公表 및 活用에까지 세심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따라서 大學評價를 추진하는 法定機關은 몇 년간을 준비 기간으로 삼고 評價 計劃을 다음과 評價 道具를 開發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각 대학의 理解 當事者뿐만 아니라 評價 專門家의 議見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겠다. 더 나아가 관계 전문 연구자를 美國이나 英國에 파견하여 훈련하는 기회를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段階Ⅱ：評價 對象 機關 登錄

모든 도구가 개발이 될 즈음하여 평가 대상 기관에 홍보하여 大學別로 自律的인 등록을 받는다. 評價에 따른 최소 경비도 이때 납부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단, 모든 학교가 한번에 다 등록하는 경우 평가의 質的 提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設立 年數가 오래된 大學부터 우선적으로 받아 2년 정도에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의 적정 수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段階Ⅲ：學校別 自體報告書 作成

각 대학별 自體評價委員會에서는 大學評價委員會에서 개발한 평가 지침에 따라 自體報告書를 작성한다.

그러나 自體評價委員會가 작업을 시작할 즈음 적정 시기에 常任研究 專門委員이 주축이 된 中央機關에서 自體 研究의 기본 방향과 작성 방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자체 연구의 기간은 1년 내지 1년 반 정도를 주어야 충분한 보고서가 작성될 것이며 개별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自體 評價가 될 것이다.

· 段階Ⅳ：現地訪問評價

현지 방문 평가는 大學評價委員會가 선정한 분야별 專門家로 구성하여 自體 報告書의 內容에 대한 客觀性・公正性・論理性을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해당 대학은 현지 방문팀에게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 주고, 필요한 시설과 지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현지 방문팀은 어떠한 資料도 요구할 수 있으며, 授業에도 참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대학의 규모에 따라서 3~6일 정도의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여야 자체 보고서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 段階Ⅴ：報告書 作成

현지 방문팀은 방문문종 자체 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실제 상황과 비교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는 현지 방문이 끝남과 동시에 해당 학교 실무자 참석하에 공개되어야 하며 이의 신청도 받아 재검토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 段階Ⅵ：評定審議會의 審議

평가 결과를 學校當局이 自體의으로 실시한 것과 現地訪問 팀이 작성한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大學의 能力(competence)을 인정하고 추후 평가 실시 年度를 정한다. 평정심의회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도 좋으며 大學評價委員會가 이를 代行하여도 좋을 것이다.

· 段階Ⅶ：異意의 接受와 審査

각 該當 大學은 평가 인정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일정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평정심의회는 이를 再審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할 것이다.

· 段階Ⅷ：評價 結果의 公表

大學評價委員會는 評價 結果를 紙上에 공표하

든가 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지인 「大學教育」誌에 공표하고, 각 大學과 高等學校에도 통보한다.

· 段階Ⅸ：評價 結果에 대한 差等 支援

政府當局은 大學評價委員會의 평가 결과에 따라 選別的인 育成 및 差等 支援을 실시한다.

7. 맷는 말

한국의 대학 평가는 그 역사가 짧은 편이나 대학의 질적 수월성을 신장하고, 그 책무성을 항상시키기 위해서 대학 평가 인정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하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평가에 대한 선입견과 회피적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적인 질적 개선을 위한 자극적 기제로서의 가치가 도외시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 평가는 대학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의지와 사회적인 책무성을 대학인 스스로가 받아들임으로써 대학 평가 인정 제도로 제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 평가를 주관하는 법정 기관이나 행정부도 대학 평가 인정 제도가 대학을 통제하는 기제가 아니라, 대학의 자율적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제도로 심화·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대학은 하루 아침에 이상적인 학문의 전당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한 국가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되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육성·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학의 교육·연구·봉사 기능은 장기적인 투자를 통하여 인내와 노력이 결집될 때 제대로 움직여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겠다. 아직도 세계적인 수준에서 볼 때 뒤떨어진 한국의 대학이 세계 속의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통한 합리적인 투자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다. *